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565 호 2026. 6. 11.(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27호[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26-7)].....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28호[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30호[하천 점용허가 고시(26-39)]..... 3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774호[「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775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779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 (허가26-33)]..... 3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780호[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공고]..... 3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782호[2026년 1분기 임대차계약 신고사항(임대조건) 공고]..... 3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787호[도로점용(굴착)허가 기간연장 공고 (허가22-19)]..... 3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790호[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압류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39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26-12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40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26-13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58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12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변경)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6. 6. 11.
2. 점용·사용의 목적 : 경작
3. 점용·사용의 장소 : 호계동 936-91번지, 호계동 산35-1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803㎡
나. 기 간 : 2025. 6. 1. ~ 2031.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농소1동 주민자치 사회적 협동조합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호계2길 10(호계동), 301호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128호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매곡동 177 외 2필지	마동안길 34	2026. 6. 10.	2026. 6. 11.	2009. 9. 1.	기존 마을인 마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함
무룡동 388	주림1길 79-2	2026. 6. 10.	2026. 6. 11.	2004. 8. 9.	기존 자연마을인 주림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함
송정동 1161-9	송정8길 4	2026. 6. 10.	2026. 6. 11.	2018. 5. 10.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 부여함

○ 도로명주소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 고
주림1길 79-2	2026. 6. 9.	건물멸실	철거 후 신축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84)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130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 명	허**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옥현로 92-**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 천 명 칭	○ 매곡천
점 용 내 용	○ 공연	점 용 면 적	○ 33.0m ²
점 용 기 간	○ 2026. 6. 28.(일) 13:00 ~ 17:0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774호

울산광역시 복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위원회 설치·운영에만 국한된 기존 조례를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개혁 전반의 관리 체계로 확장하고,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등록, 영향분석, 정비 및 의견제출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규제사무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규제개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현행)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변경)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규제개혁 기본 조례」

나.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다. 규제의 등록, 규제사무의 공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제5조)

라. 규제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제7조)

마. 규제의 재검토, 입증책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10조)

- 바.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1조~제16조)
- 사. 지방규제신고센터 설치 및 홍보물품 제공 근거 신설(안 제17조)
- 아.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안 제19조)
- 자.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미비사항 정비

3. 관계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5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예산실
- 전화번호 : 052-241-7132, 팩스번호 : 052-241-7109
- 전자우편(E-mail) : eunk1004@korea.kr

6. 참고사항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규제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2. “조례등”이란 울산광역시 복구의 조례·규칙과 그 위임을 받은 훈령·예규를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강화·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시행해야 한다.

②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3.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규제의 등록) ① 구청장은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 규제의 명칭·내용·근거·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제사무로 등록해야 한다.

② 규제사무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규제사무의 공표)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규제의 심사 등)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심사를 해야 하며,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구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해당 입법안에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는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규제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를 받은 경우, 규제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의 규제심사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규제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및 규제 수단의 타당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검토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 시행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7. 그 밖에 규제의 신설·강화 관련 참고 자료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구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④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명시) ① 구청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해야 한다. 다만,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규제의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규제의 폐지·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규제정비 요청 및 입증책임) 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조례등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정비 요청을 받으면 구청장은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③ 규제정비 요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정비·심사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회피) 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를 따른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팀장이 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지방규제신고센터)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구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능단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의견수렴과 제도 운영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이나 제16조제5항에 의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포상금) ① 구청장은 규제 개선 업무에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1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5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관계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775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복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규제관리의 세부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나. 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 제4조)
- 다. 규제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라. 규제영향분석과 재검토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마. 중요규제 판단 기준(별표 1)
- 바. 규제등록서, 규제영향분석서 등 관련 서식(별지 제1호~제4호)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5일 (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예산실
- 전화번호 : 052-241-7132, 팩스번호 : 052-241-7109
- 전자우편(E-mail) : eunk1004@korea.kr

5. 참고사항

규칙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표시)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표시)		의견
	<input type="checkbox"/> 찬성	<input type="checkbox"/>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붙임 2】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울산광역시 복구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관리 시스템에 규제를 등록해야 한다.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제5조(규제심사의 방법과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입법안의 규제심사(이하 “규제심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요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조례등의 입법안

2. 규제정비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

③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규제 신설·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한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은 경우: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

④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중요규제 여부를 판단하여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심사 절차에 조례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포함해야 한다.

제6조(규제 내용의 보완)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 과정에서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보완해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경우
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승인·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1. 규제정비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조례등의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한 규제심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규제 정비 요청의 처리 절차)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 요

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해 별지 제 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해야 한다. 다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 정비 요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입증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 정비 요청 심사에 따라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요규제 판단 기준 (제5조제1항 관련)

1. 신설하는 규제의 내용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신설 규제는 기존규제로 보며, 관련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기존 규제의 내용을 기준으로 강화 또는 완화를 판단한다.

가.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나. 국제기준에 비취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다.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라.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및 갈등이 우려되는 규제

마. 산업 분야의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바.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2. 기존 규제의 내용을 강화하는 규제인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3. 위 두 가지 기준에 불구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규제의 기준 또는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구체적이어서 조례등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재량의 영역이 사실상 없거나, 그 내용을 가감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보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1쪽 앞)

규제등록서

① 등록번호		② 등록일자	
③ 규제사무명			
④ 담당 부서		⑤ 소관부처	
⑥ 근 거 법 령	상 위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고시 등		
⑦ 부문별		⑧ 유형별	
⑨ 사무특성		⑩ 공포일	⑪ 등록사유
⑫ 규제시행일 /폐지일		⑬ 재검토기한	
⑭ 규제재검토			
⑮ 규제 목적			
⑯ 규제 내용			
⑰ 등록 이후 변동 경과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지)]

(1쪽 뒤)

규제등록서 작성 방법

- ① **등록번호** :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규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번호를 기재
- ② **등록일자** :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규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날짜를 기재
- ③ **규제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무명을 그대로 기재
- ④ **담당부서** : 해당 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소관부서(국, 과, 사업소 등) 기재
 ☞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주관하는 부서를 기재한 후 괄호 속에 조례등의 관련 관리 부서 기재
- ⑤ **소관부처** : 해당 업무 소관 중앙부처(청) 기재
- ⑥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등의 명칭과 조항 번호를 모두 기재
- ⑦ **부문별** : 규제 근거법령의 편별 구분 기준, 규제사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 열거된 예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1. 행정일반 2. 지방행정 3. 지방재정 4. 경찰교통 5. 소방민방위 6. 국가보훈 7. 교육학술 8. 체육청소년 9. 문화공보 10. 재정경제 11. 농지농정 12. 축산 13. 산림 14. 수산 15. 상공업 16. 에너지 17. 국토도시개발 18. 주택건축도로 19. 수자원 20. 토지지적 21. 건설 22. 보건위생 23. 의료약사 24. 사회복지 25. 환경 26. 노동 27. 운송물류 28. 관광 29. 해운항만 30. 정보통신 31. 기타

- ⑧ **유형별**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맞게 유형을 1~4호로 구분하여 기재 하고, 세부유형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선택하고 괄호 속에 기재

- 1호**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세부유형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 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세부유형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 3호**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세부유형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
- 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쪽)

- ⑨ 사무특성 : 위임사무 또는 자치사무 중 기재
- ⑩ 공포일 : 관련 조례등의 공포일 기재
- ⑪ 등록 사유 : 신설 규제, 누락 규제 중 해당 사항 기재. 기존 규제의 경우 등록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
- ⑫ 규제시행일/폐지일 : 해당 규제 사무의 적용 시행일 또는 폐지일 기재
 - ☞ 대부분 규제 공포일이 해당되나, 일부 규제의 경우 시행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⑬ 존속기한 : 규제 존속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연월일)을 적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설정으로 기재
- ⑭ 규제재검토 : 최종 규제 재검토 실시 일자 및 재검토 결과 기재
- ⑮ 규제 목적 : 규제를 시행하는 목적을 기재
- ⑯ 규제 내용 :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 ☞ 조례 등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지 말고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정리
- ⑰ 등록 이후 변동 경과 : 규제가 등록된 이후 변동이 발생한 경우마다 자치법규가 개정된 날짜와 변경 유형, 개선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

[별지 제2호서식]

규제정비계획서

조례·규칙명 :

분야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조항	규제 내용		재검토 기한	개선 유형	사유
				종전	변경			

※ 작성요령

- 분야 : 울산광역시 복구 여건을 고려하여 구분(① 경제, ② 관광문화, ③ 도시개발, ④ 사회복지, ⑤ 농수축산업, ⑥ 환경, ⑦ 소방방재 ⑧ 기타)
- 규제사무명 : 기존 등록규제명 기재
-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있는 법률 및 관련 조항
- 규제 내용 : 종전의 규제 내용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
- 재검토 기한 : 규제의 재검토 기한 기재
- 개선 유형 : 조례 제9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완화” 또는 “폐지”라고 기재,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존치”라고 기재
- 사유 : 정비 사유를 간략히 기입(국제기준 적용, 기업경영 애로 해소, 투자 인센티브 제공, 청정환경 보호 등)
단, 규제의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존치 사유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1쪽 앞)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 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2. 규제조문			
3. 유형		4. 입법예고	
5. 주관부서 및 책임자			
6. 근거법령 등			
7. 추진배경 및 규제 필요성			
8. 규제 내용			
9.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10. 규제 목표			
11. 비용-편익분석			
12. 영향평가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소기업영향평가
13. 일몰설정여부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여부	재검토기한(주기)	
		0000.00.00~0000.00.00(0년)	
	재검토기한 연장여부	재검토기한 설정 조문	
14.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지)]

(1쪽 뒤)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선택

가. 추진배경 및 규제필요성

나.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라. 규제 목표

2. 규제의 적정성

가.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나.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다. 국내 유사 입법사례

라. 비용·편익 분석

3. 규제의 실효성

가. 규제의 순응도

나. 규제의 집행 가능성

4.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가. 추진경과

나. 향후 평가계획

다. 종합결론

(2쪽 앞)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방법

I. 분석 대상 규제 개요

분석서 기재사항	작성 방법
1. 규제사무명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 신설규제는 새로운 사무명을 부여 - 강화 및 재검토기한 연장은 기존 등록사무명과 연계하여 작성
2. 규제조문	규제가 근거하고 있는 조례등의 명칭과 조문(번호)
3. 유형	규제의 신설, 기존규제의 강화, 재검토기한 연장인지를 구분
4. 입법예고	해당 규제가 입법예고 되는 기간을 입력
5. 주관부서 및 책임자	관련 조례 부서명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과장급, 팀장급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
6. 근거법령 등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등의 명칭과 조문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포함)
7. 추진 배경 및 규제 필요성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경위를 요약
8. 규제 내용	- 신설규제 : 신설되는 규제의 주요 내용 - 강화·재검토기한 연장 : 현행규제의 내용과 변경하려는 내용
8. 규제 목표	규제도입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
10.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기업 및 소상공인, 일반국민으로 구분 - 피규제자 이외 이해관계자 : 기업 및 소상공인, 일반국민으로 구분 - 관련 정부기관 : 해당규제를 집행하는 정부기관, 기타 관련기관
11. 비용·편익분석	규제의 영향 중 정량적·정성적 비용·편익분석 결과 요약표
12. 영향평가여부	기술·경쟁·중소기업 영향평가 해당 여부 표기
13. 일몰설정여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 규제존속기한 설정여부 표기
14.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여부를 표기

(2쪽 뒤)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분석서 기재사항	작성 방법
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선택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현황과 문제점 등을 기술
나.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복수의 규제대안을 검토하여 최종 대안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상세한 근거와 함께 제시
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리하고 조치결과를 제시
라. 규제 목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정책의도를 집약하여 제시하는 것으로서, '추진배경'에서 검토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최종결과를 의미
2. 규제의 적정성	
가.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대안이 규제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는지 검토하여 기술
나.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영향평가 : 기술규제 포함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작성 - 경쟁영향평가 : 경쟁제한규제 포함여부 작성 - 중소기업 영향평가 : 피규제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작성
다. 국내 유사 입법사례	유사한 타지자체 사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제시
라. 비용·편익 분석	피규제자 집단 및 피규제자 이외에 집단간 영향 및 규제영향 분석
3. 규제의 실효성	
가. 규제의 순응도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으로 피규제자가 처한 현실을 기준으로 볼 때 규제준수의 수월성을 정성적으로 검토
나. 규제의 집행 가능성	규제집행 담당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한 행정적 집행가능성 및 규제를 집행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여건 등 재정적 집행가능성을 검토
4.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가. 추진 경과	내부검토 과정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전반적인 경과 기술
나. 향후 평가계획	규제집행 이후 규제의 존속기한 등에 근거하여 사후평가계획 기술
다. 종합결론	규제영향분석서 전체내용의 종합적인 결론 제시

【별지 제4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검토서

건의 제목			
주관 부서	과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담당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내용	(조례/규칙 명) 제00조		
검토 결과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 수용	<input type="checkbox"/> 중장기 검토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규제사무명> ○ <근거규정>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		
추진 일정	○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779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박성수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양정동 817-1 (효정2길 2)	노선명	○ 소2-632
점용 목적	○ 도시가스 인입공사	점용 면적	○ L = 2.0m ○ A(일시) = 3.6㎡ ○ A(계속) = 0.12㎡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780호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공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조물 중 중대한 결함이 통보된 교량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대상 시설물			사유	사용제한 여부	위험표지 설치여부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병영교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28번지	북구 건설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3호 교량받침의 파손	- 교량 내하력 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통행제한 예정 ('26.6.~7.중)	여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782호

임대조건 신고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우리구 2026년 1분기 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조건 신고 현황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10. ~ 2026. 7. 31.
3. 공고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 5항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복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역 : 불임 임대차계약 신고현황(엑셀파일)참고 “개인정보 없음”

임대차계약신고 처리현황(2026. 1분기)

연번	처리일자	임대주택 주소	임대료 인상률	임대시작일	임대종료일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1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3동 504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119	20280118	90,000,000	
2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3동 105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315	20280314	100,000,000	
3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506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205	20280204	100,000,000	
4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1105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419	20280418	90,000,000	
5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405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214	20280213	90,000,000	
6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305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228	20280227	100,000,000	
7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1004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319	20280318	100,000,000	
8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3동 301호 (상안동, 프리드)	0%	20251213	20271202	68,250,000	127,000
9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905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318	20280317	90,000,000	
10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604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329	20280328	90,000,000	
11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1002호 (상안동, 프리드)	0%	20251207	20271206	100,000,000	
12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3동 303호 (상안동, 프리드)	4.76%	20260219	20280218	71,500,000	
13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3동 501호 (상안동, 프리드)	4.76%	20260323	20280322	88,000,000	
14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3동 304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227	20280226	90,000,000	
15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3동 1004호 (상안동, 프리드)	4.76%	20251215	20271214	88,000,000	
16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705호 (상안동, 프리드)	4.76%	20260228	20280227	99,000,000	
17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502호 (상안동, 프리드)	4.76%	20260508	20280507	88,000,000	
18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202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318	20280317	100,000,000	
19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105호 (상안동, 프리드)	-16.67%	20251229	20271228	100,000,000	
20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302호 (상안동, 프리드)	4.66%	20260329	20280328	75,000,000	
21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804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401	20280331	110,000,000	
22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803호 (상안동, 프리드)	0%	20251215	20271214	100,000,000	
23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603호 (상안동, 프리드)	0%	20251228	20271227	82,680,000	
24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403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210	20280209	100,000,000	
25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303호 (상안동, 프리드)	4.76%	20260228	20280228	88,000,000	
26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202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418	20280417	90,000,000	
27	20260414	울산광역시 북구 통상10길 14 주권축물제1동 302호실 (화봉동)	0%	20260201	20270131	3,000,000	270,000
28	20260413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7길 5 203호실 (양정동)	0%	20260205	20280204	3,000,000	270,000
29	202604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4동 1203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60330	20271024	295,000,000	90,000
30	202604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1501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60330	20271024	295,000,000	90,000
31	202604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4동 204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60303	20271024	295,000,000	90,000
32	202604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4동 201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36%	20260303	20271024	318,000,000	110,000
33	202604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1동 2001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36%	20260324	20271024	318,000,000	110,000
34	20260409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905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330	20280329	110,000,000	
35	20260409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7길 35 301실 (명촌동)	1.22%	20251229	20271228	3,000,000	300,000
36	20260409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7길 35 202실 (명촌동)	0%	20260124	20280123	3,000,000	300,000
37	20260408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7길 35 201실 (명촌동)	1.81%	20251230	20271229	3,000,000	200,000
38	20260408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404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320	20280319	90,000,000	
39	20260330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0길 11 301실 (회봉동)	4.02%	20260112	20270111	2,400,000	250,000
40	20260330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5로 66 104동 2502호 (산하동, 울산블루마시티푸르지오)	-0.86%	20260331	20280330	1,000,000	430,000
41	20260330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0길 11 303실 (회봉동)	0%	20260301	20270228	3,000,000	260,000
42	20260330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0길 11 201실 (회봉동)	3.69%	20260116	20270116	3,000,000	270,000
43	20260325	울산광역시 북구 사정2길 20 402호 (회봉동)	4.14%	20260303	20280302	20,000,000	680,000
44	20260325	울산광역시 북구 사정2길 20 302호 (회봉동)	0%	20260228	20270227	10,000,000	750,000
45	20260324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2길 12 202실 (호계동)	0%	20260311	20270310	3,000,000	392,000
46	20260320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14 301실 (호계동)	0%	20260205	20270204	3,000,000	290,000
47	20260320	울산광역시 북구 진창13길 18 진창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58 6 603호 (진창동)	0%	20260302	20270301	2,000,000	270,000
48	20260320	울산광역시 북구 진창13길 18 진창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58 6 304호 (진창동)	0%	20260305	20270304	3,000,000	290,000
49	20260320	울산광역시 북구 진창13길 18 진창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58 6 302호 (진창동)	0%	20250216	20270115	3,000,000	270,000
50	20260320	울산광역시 북구 진창13길 18 진창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58 6 203호 (진창동)	0%	20260220	20270219	3,000,000	250,000
51	20260312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1동 501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36%	20260224	20271024	318,000,000	110,000
52	20260312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1길 16 203실 (양정동)	0%	20260112	20280111	3,000,000	330,000
53	20260312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1길 16 201실 (양정동)	2.43%	20260114	20280113	3,000,000	305,000
54	20260312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491 407호 7층실 (양정동)	0%	20251210	20261209	2,000,000	320,000
55	20260312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491 310호 10층실 (양정동)	0%	20251124	20261123	2,000,000	350,000
56	20260312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491 303호 3층실 (양정동)	0%	20251128	20261127	5,000,000	370,000
57	20260312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491 301호 1층실 (양정동)	0%	20251208	20261207	2,000,000	320,000
58	20260312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491 208실 (양정동)	0%	20251216	20261215	2,000,000	320,000
59	20260312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491 214실 (양정동)	0%	20251129	20261128	2,000,000	320,000
60	20260312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491 406호 6층실 (양정동)	0%	20251227	20261226	2,000,000	320,000
61	20260312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491 311호 11층실 (양정동)	0%	20251231	20261230	2,000,000	350,000
62	20260312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491 209실 (양정동)	0%	20260107	20270106	2,000,000	320,000
63	20260312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491 212실 (양정동)	0%	20260112	20260111	2,000,000	320,000
64	20260312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402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60123	20271024	295,000,000	90,000
65	20260312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4동 203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60129	20271024	295,000,000	90,000
66	20260312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4동 1803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60128	20271024	295,000,000	90,000
67	20260312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801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124	20271024	295,000,000	90,000
68	20260312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701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219	20271024	295,000,000	90,000
69	20260312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4동 304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60128	20271024	295,000,000	90,000
70	20260312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1동 602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36%	20260204	20271024	318,000,000	110,000
71	20260311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길 14-12 302실 (진창동)	4.53%	20260125	20270124	3,000,000	450,000
72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2길 12 201실 (호계동)	0%	20260118	20270117	3,000,000	385,000
73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902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74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702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75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602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76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502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77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302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78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202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79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1802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80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1702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81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1602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82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1502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83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1402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84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1302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85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1202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86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1102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87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102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88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1002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89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4동 903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90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4동 803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91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4동 703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92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4동 603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93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4동 503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94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4동 403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95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4동 303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96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4동 2503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97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4동 2303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98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4동 2203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000,000	90,000
99	202603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4동 2103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벤처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51025	20271024	295,	

351	20260202	울산광역시 북구 통상10길 14 주건축물제1동 303호실 (화봉동)	0%	20251110	20261109	2,000,000	270,000
352	20260129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1로 13 105동 201호 (매곡동, 매곡현대아파트)	-25.43%	20260127	20280126	3,000,000	315,000
353	20260129	울산광역시 북구 진창13길 18 진창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58 6 501호 (진창동)	0%	20260125	20270124	3,000,000	250,000
354	20260109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 102동 704호 (송정동, 울산송정 호반베르디움)	3.76%	20260118	20270117	20,000,000	1,030,000
355	20260107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3길 13-1 102실 (양정동)	0%	20260110	20261209	1,000,000	250,000
356	20260102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101호 (상안동, 프리드)	0%	20251013	20271012	90,000,000	
357	20260102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204호 (상안동, 프리드)	0%	20251201	20271130	90,000,000	
358	20260102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702호 (상안동, 프리드)	0%	20251128	20271127	100,000,000	
359	20260102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501호 (상안동, 프리드)	0%	20251107	20271106	100,000,000	
360	20260102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402호 (상안동, 프리드)	4%	20251114	20271113	78,000,000	
361	20260102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303호 (상안동, 프리드)	0%	20250920	20290919	10,500,000	350,000
362	20260102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1004호 (상안동, 프리드)	0%	20251201	20271130	100,000,000	
363	20260102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305호 (상안동, 프리드)	0%	20251201	20271130	100,000,000	
364	20260102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604호 (상안동, 프리드)	0%	20251110	20271031	100,000,000	
365	20260102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3동 401호 (상안동, 프리드)	0%	20251121	20271120	20,000,000	320,000
366	20260102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1006호 (상안동, 프리드)	0%	20251114	20271113	110,000,00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787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송정동 1128-1번지 일원	노선명	○ 광로3-3 (산업로)
점용 목적	○ 울산송정 산업로 입체화(지하차도 개설)공사	점용 면적	○ L = 620m ○ A(일시) = 13,708㎡ ○ A(계속) = 11,314㎡
점용 기간	○ 당초 : 일시점용 2022. 3. 24 ~ 2026. 5. 24. 계속점용 준공일로부터 10년 ○ 변경 : 일시점용 2022. 3. 24 ~ 2027. 12. 31. 계속점용 준공일로부터 10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790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압류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재산(부동산, 예금 및 채권 등 전자압류) 압류예고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 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공 고 명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 2026. 6. 8. ~ 2026. 6. 23. (15일간)
- 3. 공고대상

연번	위반건축물 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원)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428-3번지 일원	조**	무단신축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압류예고서 송부	3,226,000원

- 4.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울산광역시 북구 세무2과(세외수입팀)에서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5. 공고 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세무2과(☎052-241-7527) 및 건축주택과(☎052-241-80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26 - 12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과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회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한 귀속 주체 변경(안 제6조~제20조)

- (현행) 관장
- (개정) 구청장

나.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변경 (안 제5조)

- (현행) 운영자문위원회 명칭

위원장 관장, 위원회 구성 10명 이내의 위원,
당연직 위원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

간사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 (개정) 운영위원회로 명칭 변경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회 구성 20명 이내의 위원,
당연직 위원 문화업무 담당 국장, 담당 부서장, 문화예술회관장

간사 공연 및 전시 업무 팀장

다. 사용료의 납부기한 명확화(안 제12조)

- (현행) 관장이 정한 기한
- (개정)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사용예정일이 14일 이내이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라.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3조)

- (현행)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마.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안 제14조)

취소사유	현행	개정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10일 전 전액반환 - 5일 전 50퍼센트 반환	-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바.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53조, 제156조

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10. 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④체육시설업

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10조

마.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연암동), 울산 북구문화예술회관

2) 전화번호 : 052)241-7382, 팩스번호 : 052)241-7359

3) 전자우편(E-mail) : smuf1126@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을“(운영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 부서장”을 “담당 국장, 담당 부서장 및 문화예술회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원”을 “의원 1명”으로 한다.

2. 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심의

제5조의2제5항 중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를 “공연 및 전시 업무 팀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기별로 위촉·운영하거나”를 “위촉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허가하여야”를 “허가해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20퍼센트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문화예술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3.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상복구하여야”

를 “원상복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상하여야”를 “변상해야”로 한다.

제18조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u>운영자문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신 설></p> <p>2.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p> <p>③ 위원장은 <u>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u>(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p> <p>④ 당연직 위원은 <u>문화업무 담당 부서장</u>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u>의원</u></p> <p>2. ~ 3. (생 략)</p> <p>⑤·⑥ (생 략)</p> <p>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p>	<p>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 ----- <u>운영위원회</u> ----- -----.</p> <p>2. <u>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심의</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② ----- <u>20명</u> ----- -----.</p> <p>③ ----- <u>부구청장</u> ----- ----- -----.</p> <p>④ -----<u>문화업무 담당 국장, 담당 부서장 및 문화예술회관장</u> ----- ----- -----.</p> <p>1. ----- <u>의원 1명</u></p> <p>2. ~ 3. (현행과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p>

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6조(회원제 운영) ① 관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자원봉사자) ① 관장은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시설 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강사의 운영 등) ① (생략)

② 관장은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를 기별로 위촉·운영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9조(사용허가) ① 문화예술회관을 사용

행과 같음)

⑤ -----
-----공연 및 전시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회원제 운영) ① 구청장-----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강사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
위촉 또는-----

-----.

③ 구청장-----

-----.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허가) ① -----

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11조(허가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① (생략)

②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 시 관장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수강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사용료·수강료의 감면) ① 삭

----- 구청장-----

-----.

② 구청장-----

허가해야-----.

제10조(사용제한) 구청장-----

-----.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허가취소) 구청장-----

-----.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수강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수강료의 감면)

제

② 관장은 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영리 목적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활동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감면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 1. ~ 4. (생 략)
- 5.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20퍼센트

6. (생 략)

제14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1. (생 략)
- 2. 문화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② 구청장-----

③ -----

- 1. ~ 4. (현행과 같음)
- 5.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구성원: 20퍼센트

6.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① -----

- 1. (현행과 같음)
- 2. 문화예술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

② (생략)

제15조(강좌 운영 활성화 등) ① 관장은 강좌의 활성화를 위해 강사, 수강생과의 간담회 등을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3.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강좌 운영 활성화 등) ① 구청장-----

-----.

② 수강생은 학습동아리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료기준 등은 강좌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 및 홍보물을 문화예술회관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와 홍보물은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② -----
----- 구청장 -----
-----.

③ 구청장 -----

-----.
----- 포
함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

구청장-----.

② -----

----- 원상복구해야 -----
-----.

③ -----
----- 구청
장-----
-----.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

-----다해야-----.

② -----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검인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판매되지 않은 입장권과 입장시 잘라낸 입장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제20조(입장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3. 그 밖에 관장이 문화예술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변상해야-----.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구청장의-----
-----.

제19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 --

구청장-----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구청장-----

-----.

제20조(입장제한) 구청장-----

-----.

1. 2. (현행과 같음)

3. ----- 구청장-----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 ⑥ (생략)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⑧ ~ ⑩ (생략)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10. 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④체육시설업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1-2)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 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제외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3) 신체상 피해 발생	○ 배상액 배상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1-2)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frac{\text{이미 경과한 기간(일수)}}{\text{계약상 이용 기간(일수)}})$]+위약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frac{\text{이미 경과한 기간(일수)}}{\text{계약상 이용 기간(일수)}})$]-위약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며,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8조(다자녀가정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이용료·주차료 등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26 - 13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과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사용신청서 정비 및 개인정보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대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한 귀속 주체 변경(안 제3조~제9조)

- (현행) 관장
- (개정) 구청장

나. 정기대관 경합에 따른 사용자 결정기준 신설 (안 제5조)

- (현행) 경합시 추첨으로 결정

- (개정) 정기대관 사용허가의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다. 각종 안내사항 전달을 위한 전자우편 기재란 신설
(별지 제5호 서식)
-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식 정비
(별지 제1호서식, 제5호서식, 제9호서식)
-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관계법령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제2호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출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연암동), 울산 북구 문화예술회관
- 2) 전화번호 : 052)241-7382, 팩스번호 : 052)241-7359
- 3) 전자우편(E-mail) : smuf1126@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 번호	
	주 소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장”을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20일”을 “30일”로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등재하여야”를 “등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도의 주첨으로 결정한다”를 “정기대관 사용허가의 경우 조례 제5조제1항의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용자를 결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제13조제2항”으로, “관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의 규정”을 “제14조”로, “관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

장”을 “구청장”으로,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관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운용하여야”를 “운용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서식,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				결	담당자	담당	부서장
(√ 표시)회원종류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부부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단체 회비금액 :				재			
개 인 회 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 소						
	집 전 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단 체 회 원	단 체 명				대 표 자		
	회 원 수		단체주소				
	집 전 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법 정 대리인	성 명	신청자와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회 원 접 수 증

성명(단체명)		유효기간	
주 소			
회비납부액		회원수	구좌수
귀하(단체)께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별지 제1호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회비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강좌 등 행사관련 정보 제공
 -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2. 수집하려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 회원수, 단체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1.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2쪽 뒤)

대관준수사항 서약서

-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취소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받은 시간 외의 사전사용(무대연습, 무대설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이 지연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 조례 제11조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공연장 음향 및 조명시설물 등은 문화예술회관 내의 시설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에 필요한 운영인력(무대, 조명, 음향, 하우스어셔 등)은 별도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로부터 반입할 경우 대관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공연장과 문화예술회관 내·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진행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관람객의 각종 안전사고발생 및 시설물 훼손 시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무대관계자와 공연진행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무대관계자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내 촬영과 녹음은 공연자의 동의를 얻은 후, 무대관계자의 허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 문화예술회관 내에서 상행위(상품 판매, 유료사진촬영 등)를 할 수 없으며, 공연장 좌석수를 초과하여 티켓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불이익 조치)
문화예술회관의 허가조건 및 시설의 사용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법령 및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성명 :

(서명)

(3쪽 앞)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2. 수집하려는 항목 : 성명,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4. 수집 근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8조 1항
5.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사용허가를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수 강 신 청 서

제 기

접수번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기존회원 <input type="checkbox"/> 복구민 <input type="checkbox"/> 신규	강좌명	
신 청 자	성 명				수강료
	주 소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집 전 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법 정 대 리 인	성 명	신청자와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접 수 증

기 수	
강좌명	
성 명	
<p>수강변경 및 취소</p> <p>① 강의일정, 강사, 강의실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② 강의변경, 취소, 환불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릅니다.</p> <p>③ 해당강좌 수강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p>	
년 월 일	
<p>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p>	

(별지 제9호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회비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강좌 등 행사관련 정보 제공
-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2. 수집하려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 회원수, 단체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1.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원제 운영방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u>제6조의 규정에</u>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와 같으며, 회비는 신청과 동시에 <u>납부하여야</u> 한다.</p> <p>② 회원가입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u>제출하여야</u> 하며,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다음해 그달 말일까지로 한다.</p> <p>③ <u>관장은</u>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원접수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 관리대장에 등재한다.</p> <p>④ (생 략)</p>	<p>제3조(회원제 운영방법) ① ----- ----- ----- <u>제6조</u>----- ----- ----- ----- <u>납부해야</u> -----.</p> <p>② ----- ----- <u>제출해야</u> ----- ----- -----.</p> <p>③ <u>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자원봉사자) ① 자원봉사 희망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희망신청서를 <u>제출하여야</u> 한다.</p> <p>② <u>관장은</u>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매월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 및 현황을 <u>작성하여야</u> 한다.</p>	<p>제4조(자원봉사자) ① ----- ----- ----- <u>제출해야</u> -----.</p> <p>② <u>구청장</u>----- ----- ----- <u>작성해야</u> -----.</p>
<p>제5조(사용·수강신청 및 허가등) ① 조례 <u>제9조의 규정에</u> 따른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기준 <u>20일</u>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기준 15일 전</p>	<p>제5조(사용·수강신청 및 허가등) ① ----- ----- <u>제9조</u>----- ----- ----- <u>30일</u>----- ----- -----</p>

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허가사
항을 결정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
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신
청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4항외에 사용신청 날짜가 경합
될 경우 별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⑥·⑦ (생 략)

제6조(사용료등 징수) ①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
령」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를 준용하

----- 구청장에
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

-----.

② 제1항-----

----- 첨부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구청장-----

----- 등재해야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기대관 사용허가의 경
우 조례 제5조제1항의 울산광역시 북
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료등 징수) ① ----- 제
12조제2항-----

여 징수한다.

② (생 략)

제7조(사용료 감면·반환 신청등) 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 후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8조(입장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을 받은 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인부등재하고 검인을 이용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제9조(수료증) 관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감면·반환 신청등) ① --- 제13조제2항-----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

② --- 제14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

③ 구청장-----

----- 반환해야 -

-----.

제8조(입장권의 검인) ① -----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

② -----구청장-----

-----.

제9조(수료증) 구청장-----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3. 14.>

1. (생략)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 6. (생략)